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7일, 박순범 의원 외 18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

(2023년 8월 3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선하 의원

나. 제안이유

○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아이돌보미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보험가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입 지원과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안 제2조제9호를 신설하여 “돌봄시설”을 시장·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공동체가 운영하는 돌봄공간으로 정의하고,
- 안 제10조2를 신설하여 돌봄시설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 2023년 7월 기준 경북도내 아이돌봄 사업기관은 22개기관, 이용아이 수는 8,101명(시간제일반 7,627명, 시간제종합 137명, 질병감염아동 148명, 영아종일제 189명), 아이돌보미는 2,22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붙임자료). 또한, 최근 3년간 아이돌봄 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총 119건으로 2021년 41건, 2022년 38건, 2023년 7월말 기준 4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3년간)

(단위 : 건)

총계			2021			2022			2023. 7월말 기준		
계	아동	돌보미	계	아동	돌보미	계	아동	돌보미	계	아동	돌보미
119	67	52	41	23	18	38	20	18	40	24	16

아울러, 아이돌봄 관련 2023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총 678 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관련 예산현황(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본예산 기준)

사업명	2021				2022				2023			
	계	국비	도비	사면비	계	국비	도비	사면비	계	국비	도비	사면비
총계	37,721	22,509	5,708	9,504	49,080	23,201	9,528	16,351	67,864	40,098	42,297	14,689
아이돌봄지원 (시군)	31,845	22,292	2,866	6,687	32,726	22,908	2,945	6,873	50,380	39,800	35,266	4,534
아이돌봄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지원	310	217	93	-	586	293	293	-	596	298	298	-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5,398	-	2,699	2,699	15,600	-	6,240	9,360	16,666	-	6,666	10,000
영아전담아이돌보미지원	168	-	50	118	168	-	50	118	222	-	67	155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 아이의 보험가입 지원(1인당 종합배상책임보험 12,000원 정도)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명시하는 것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아이돌보미의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돌봄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과 아이돌보미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한 돌봄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법인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처벌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22개 시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와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전매뉴얼을 만들고 교육과 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자료>

202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이용아동수, 실이용가구수 현황(7월말)

(단위:명,가구)

사업기관	실이용아동수(누적)					실이용가구수(누적)					돌보미 (소속)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 아동지원	영아 종일제	합계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 아동지원	영아 종일제	합계	
합계	7,627	137	148	189	8,101	2,555	41	363	83	3,042	2,223
포항시가족센터	1,096	27	4	16	1,143	341	6	13	4	364	27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770	8	2	20	800	208	2	17	5	232	240
경북보건대학교	618	2	15	15	650	180	1	50	7	238	169
안동시가족센터	529	4	17	31	581	156	0	33	14	203	166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887	23	5	11	926	240	5	18	3	266	208
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80	3	8	9	300	98	2	22	3	125	89
영천시가족센터	405	15	12	6	438	152	5	23	3	183	138
상주시가족센터	297	9	15	12	333	112	3	32	10	157	102
문경시가족센터	324	0	16	8	348	124	0	32	2	158	89
경산시가족센터	617	4	1	13	635	208	2	5	5	220	185
군위군가족센터	50	1	0		51	24	1	0	0	25	25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5	0	0	2	177	82	0	0	1	83	40
청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	0	5	2	88	31	0	10	0	41	25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4	0	3	6	243	121	0	6	5	132	55
영덕군가족센터	79	2	5	1	87	35	1	11	0	47	26
청도군가족센터	142	0	0	7	149	60	0	0	6	66	45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	63	0	5	4	72	28	0	10	1	39	33
성주군가족센터	71	0	0	0	71	39	0	0	0	39	23
칠곡군가족센터	414	32	24	8	478	162	12	58	2	234	130
예천군가족센터	320	1	4	15	340	98	1	7	9	115	109
봉화군가족센터	40	0	2	1	43	19	0	5	1	25	15
울진군가족센터	130	6	5	2	143	34	0	11	2	47	33
울릉군가족센터	5	0	0	0	5	3	0	0	0	3	5

※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추출, ※ 21.7월분부터 실이용가구수로 집계함. ※ 군위 : 23.7월분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됨.